

2013년 사방사업 시행

2013년 사방사업을 위하여 「사방사업법」 제5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2월 25일

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



1. 사업명 : 2013년 사방사업
2. 사업시행안내 및 사업대상지 조서 : '붙임' 참조
3. 발주주체 : 인천광역시 계양구청
4. 사방사업법 제5조에 의거 사방사업을 시행코자 하며, 사방사업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방사업 시행에 필요한 측량의 장애물 제거·소요자재의 채취·사용, 임시도로 등으로 사용함을 통지합니다.
5. 공고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간
6. 기타사항
 -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공원녹지과(☎032-450-565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